

『2016 서울희망장학금 고등학교분야』

자치구 담당자 간담회 회의자료

교육급여 및 교육청 학비지원 확대 등 장학금 지원 환경변화에 따라, 서울희망장학금 자치구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6년 장학사업 운영 방안을 협의하고자 함.

I 서울희망장학금 고등학교분야 소개

추진근거

- 시장지시사항 제54호(2003.11.3)
- 초·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
-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
- 서울특별시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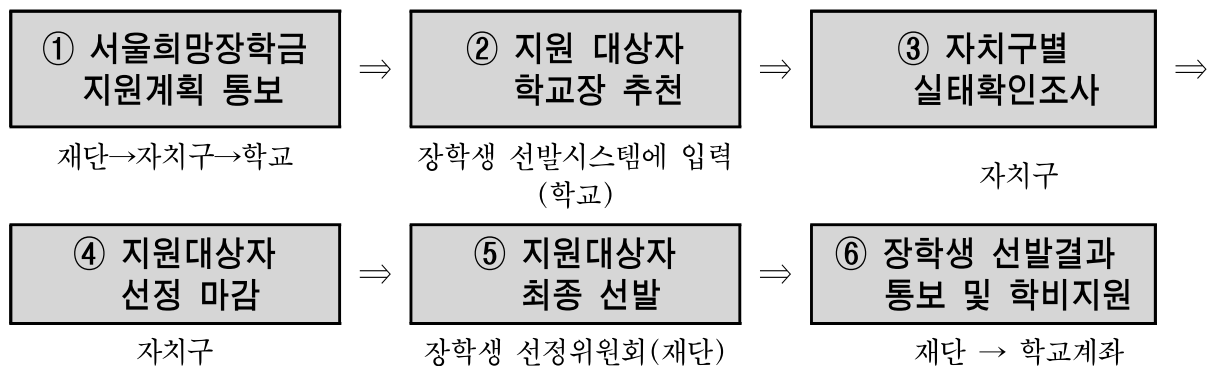
2016년 지원개요

- 지원규모 : 50억원(서울시 출연금)
- 지원인원 : 분기별 약 3,100명(연간 약 12,400명)
- 지원내용 : 수업료, 학교운영비 전액(단, 특성화고는 학교운영비만 지원)
- 지원대상
 -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 제 31조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 시설에 재학하는 자와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(소득기준 협의예정)

- 선발제외자

- 학부모 모두 서울시 이외의 타 시·도 거주자
- 소득 실태조사가 불가능한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별법령에 의거 학비지원을 받는 자
- 직장을 통하여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
- 공무원의 자녀
- 교육급여, 교육청 학비지원 등 타기관을 통해 이미 전액 학비지원을 받고 있거나, 받기로 예정된 자(단, 각종대회 입상자의 포상금 등은 예외)

- 장학생 선발 절차



○ 장학금 환수

- 환수대상 : 장학생 선발일 이후 이종수혜자, 자퇴, 전학 등 환수사유에 해당 될 경우 기 지급한 장학금 환수조치(학교 -) 재단)

○ 학교별 인원 배정(2015년 3분기부터 적용)

- 「교육청 학비지원사업 지원자 소득 분포표」를 근거로 학교별 기준 구간 인원 비율에 따라 배정
- 단, 교육청 학비지원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서울희망장학금에 추천 받을 수 있도록 학교별 기본 인원을 1명씩 배정(1,2분기 통합 선발시에만 적용)

- 인원배정식

$= 1 + \frac{\text{학교별 대상인원(A)} \times \text{서울희망장학금 예산액(B)}}{\text{서울시 대상인원 전체 지원시 필요액(C)}}$
<p>- 학교별 대상인원 전체(A) : 학교별 교육청 학비지원사업 결과 중위소득 기준 구간 인원 합계</p> <p>- 서울희망장학금 예산액(B) : 서울희망장학금 연간 예산액 - {기본배정(1명) 예산액 + 서울다솜학교 연간 예산액}</p> <p>- 서울시 대상인원 전체 지원시 필요액(C) : 교육청 학비지원사업 결과 중위소득 기준 구간 인원 전체 지원시 필요한 예산액 (학교별 대상인원 x 학비(4분기))</p> <p>① 학교별 기본 배정인원 1명은 1,2분기 통합선발시에만 적용 ② 서울희망장학금 예산액(B)은 연간 서울희망장학금 예산액 중 학교당 기본배정인원 예산액과 서울다솜학교 지원 예산액을 제외한 금액임 ③ 분기별 잔여예산(반납금 및 탈락자 발생시 잔액) 발생시 3,4 분기 재배정 ④ 인원 배정 후 잔액 발생시 대상 학생이 많은 학교 순서대로 총예산 범위 내에서 1명씩 추가 배정, 잔액 부족시 대상학생 수가 작거나 재학생 수가 작은 학교 순으로 1명씩 차감 배정.</p>

○ 2016년 예상 배정인원

최저생계비 (중위소득)	150~160 (64%)	150~170 (68%)	150~180 (72%)	150~190 (76%)	150~200 (80%)
2015 학비지원 신청자분포	1,157	2,208	3,275	4,280	5,129
고교분야 배정인원	3,141	3,148	3,138	3,138	3,150

➔ **예상 배정인원 : 총 327개 학교 평균 약 3,143명 배정**

※ 실제 배정인원은 2016년 교육청 학비지원자 분포(교육청 협조 요청)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II 2016년 변경사항 안내

□ 장학금 명칭 변경

- '하이서울' 브랜드 사용 종료에 따라 장학금 명칭 변경
- 서울시 출연 장학금을 뜻하는 '서울'과 장학생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응원하는 '희망'의 단어를 결합하여 '서울희망장학금'으로 변경
-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장학금 종류
 - 고등학생 대상 : 고등학교분야, 청소년재능분야, 하나고분야
 - 대학생 대상 : 대학분야, 공익인재분야

□ 생활실태조사 대상 자치구별 분배 방식 변경

- 변경내용
 - 기존 : 학교 위치 기준으로 조사대상의 자치구 분배
 - 변경 : 학생의 주소 기준으로 자치구 분배
- 기존 조사방식
 - 자치구 관외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조사 기간이 많이 소요됨

▶ A자치구에 있는 학교 조사대상자가 B자치구에 거주할 경우
· A자치구 대상 확인 -> B자치구 조사협조 -> B주민센터 조사요청 -> B자치구 회신 -> A자치구 통보 및 시스템 입력

○ 변경된 조사방식

- 추천된 학생의 주소기준 자치구 분배 및 학교소재지 기준 모니터링

▶ A자치구에 있는 학교 조사대상자가 B자치구에 거주할 경우
· B자치구 대상 확인 -> B주민센터 조사요청 -> B자치구 회신 및 시스템 입력
· A자치구 관내 학교별 신청현황 및 조사결과 모니터링
※ 관내 학교 기준으로 추천현황 및 조사 결과 확인 가능

○ 장학생 선발관리시스템 고도화 진행중

- 완료 예정일 : 2016.2.29.

Ⅲ 사업운영방향 협의 안건

□ 생활실태조사 방식

○ 교육청 학비지원사업과 서울희망장학금 조사방식의 차이 발생

- 장학생 소득실태조사 방식이 교육청 학비지원사업의 산출방식과 차이가 있어(교육청은 서울희망고교분야 대비 소득환산율의 1/3만 적용, 차량 소득인정액 기준 차이 등) 교육청 학비지원사업 신청 학생과 미신청 학생의 조사 결과에 차이가 발생.

구분	서울희망장학금	교육청 학비지원사업
소득평가액	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식 사용 소득환산율(행복e음 시스템) 적용 - 일반재산 : 4.17% - 금융재산 : 6.26% - 승용차 : 100% ※ 1600cc 이하, 10년 이상의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 ※ 대도시 기본 재산 5400만원 제외	행복e음 소득환산율의 1/3 적용 - 일반재산 : 4.17% / 3 - 금융재산 : 6.26% / 3 - 승용차 : 100% / 3 ※ 2천cc 이하, 6년 이상의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

○ 2015년 고등학교분야 신청자 중 교육청학비지원 미신청자 비율

신청자계	교육청 미신청자	교육청 신청자	미신청자비율
3,425	784	2,641	22.89%
1,715	455	1,260	26.53%
1,471	396	1,075	26.92%

□ 학교별 배정인원의 2배수 추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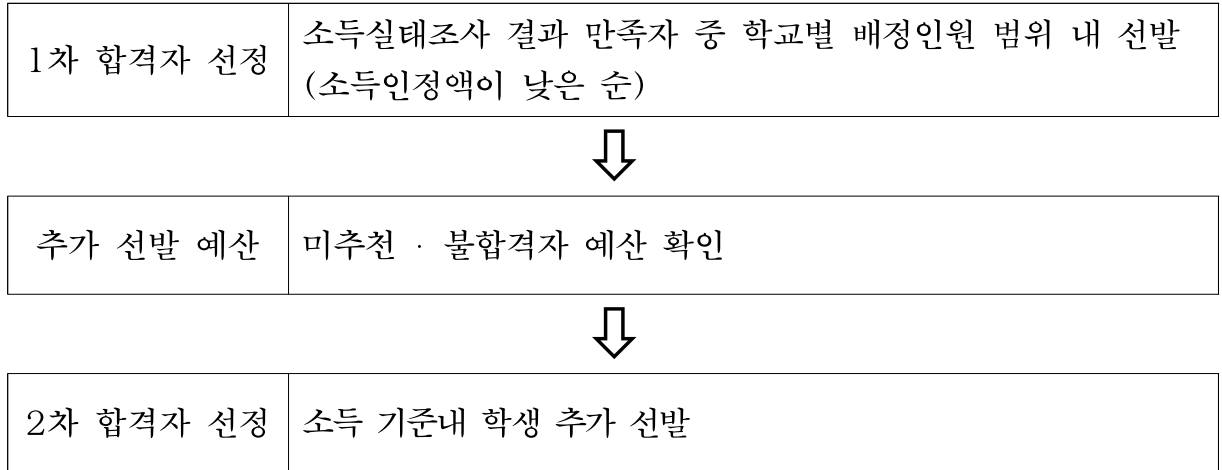
○ 사유 : 실태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해 탈락자가 다수 발생

- 2015년 사업결과

구분	신청인원	소득인정액 초과	탈락비율
1,2분기 통합선발	3,425	589	17.2%
3분기 추가선발	1,715	542	31.6%
4분기 추가선발	1,471	545	37%
합계	6,611	1,676	25.4%

※ 서울다솜학교 제외

○ 장학생 선발 방식



- 대기인원 선발 예시

학교별	배정인원	추천인원	기준내 인원	1차 합격인원	미추천, 불합격	대기인원
A학교	10	20	20	10	0	10
B학교	10	15	12	10	0	2
C학교	10	10	10	10	0	0
D학교	10	10	8	8	2	0
E학교	10	8	6	6	2	0
합계	50	53	51	44	4	12

- 추가선발 방식(안)

구분	잔여예산	추가선발방식	고려사항
1안	6명분 :D,E학교	기준 범위내 학교별 인원 비율에 따라 추가 선발 · A학교:B학교 = 5:1 비율로 선발	A학교의 소득이 높은 학생이 B학교의 소득이 낮은 학생보다 먼저 선발될 수 있음
		전체 기준범위내 잔여 인원 중 소득 낮은 순으로 추가 선발 · A,B학교 전체 12명 중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발	

□ 장학금 지원 대상(선발대상 소득기준 협의)

- 2016년 교육급여 및 교육청학비지원 사업 확대에 의한 지원 대상 조정

구분	지원대상	지원내역
교육급여	중위 50% (최저생계비 120%)	수업료, 학교운영비(교육청학비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), 교과서대, 학용품비
교육청 학비지원	중위 60% (최저생계비 150%)	수업료, 학교운영비, 급식비 등
서울희망장학금	미정	수업료, 학교운영비

- 중위소득, 최저생계비 비교표

(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-2734, 2015.6.18.)

지원내역	중위 소득	최저 생계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2016기준 중위소득	100%	250%	1,624,831	2,766,603	3,579,019	4,391,434	5,203,849	6,016,265
서울희망 장학금	80%	200%	1,299,865	2,213,282	2,863,215	3,513,147	4,163,079	4,813,012
	76%	190%	1,234,871	2,102,620	2,720,055	3,337,491	3,954,926	4,572,361
	72%	180%	1,169,878	1,991,954	2,576,894	3,161,832	3,746,771	4,331,711
	70%	175%	1,137,382	1,936,622	2,505,313	3,074,004	3,642,694	4,211,386
교육청 학비지원	60%	150%	974,899	1,659,962	2,147,411	2,634,860	3,122,309	3,609,759
교육급여	50%	120%	812,415	1,383,302	1,789,509	2,195,717	2,601,925	3,008,132
주거급여	43%	107%	698,677	1,189,640	1,538,978	1,888,317	2,237,656	2,586,994
의료급여	40%	100%	649,932	1,106,642	1,431,608	1,756,574	2,081,540	2,406,506
생계급여	29%	-	471,201	802,315	1,037,916	1,273,516	1,509,116	1,744,717

- 2016년 예상 배정인원

최저생계비 (중위소득)	150~160 (64%)	150~170 (68%)	150~180 (72%)	150~190 (76%)	150~200 (80%)
학비지원 신청자분포	1,157	2,208	3,275	4,280	5,129
고교분야 배정인원	3,141	3,148	3,138	3,138	3,150

➔ 2배수 추천 예정임을 감안하여 기준 설정